

Session

I4

2003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

GET THE SPIRIT OF LOGISTICS INNOVATION

**중국해운규정의 영향과
국적선사의 대응방향**

전형진 책임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자료

중국 해운규정의 변화 및 국적선사의 대응방안

일시 : 2003. 10.

 Korea Maritime Institute
전형진 책임연구원

목 차

- 제1장 중국 해운규정의 변화배경 및 정비방향
- 제2장 중국 국제해운조례의 내용
- 제3장 중국 국제해운조례의 문제점 및 차별관행
- 제4장 중국 국제해운조례의 변화의 영향
- 제5장 국적선사 및 정부의 대응방안

중국 해운규정의 변화배경 및 정비방향

- 중국은 2002년 11월 WTO 정회원국의 자격취득
 - 그동안 중국은 세계 경제질서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WTO 개방일정에 따라 해운분야에 대한 개혁 및 개방을 추진
- 해운규정의 개혁추진
 - 중국 해운시장으로의 진입자유화 및 시장경쟁체제 구축을 도모
 - 이러한 차원에서 해운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체계화, 일원화시킨 국제해운조례를 2002년 1월 1일에 발효

중국 해운규정의 변화배경 및 정비방향

정비방향		주요 내용
대내부문	자유화	□ 해운기업의 시장진입 및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 독과점 또는 역할분담체제의 점진적 폐지
	체계화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해운규정의 통합 □ 해운규정의 관리를 일원화
대외부문	개방화	외국 해운기업의 시장진입 및 물류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국제화	WTO 가입조건인 개방일정에 해운규정의 차별조항 점진적 폐지

중국 국제해운조례의 내용

□ 중국 해운관련규정의 기본법이자 최상위법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정·운영한 각종 해운규정을 통합
- 통합법인 국제해운조례의 운영·관리업무를 교통부로 일원화

□ 중국 해운부문 개혁 및 개방의 핵심수단

- 외국 해운기업 및 관련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자유화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 관습 또는 관행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시발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국제해운조례의 내용

구 분	제 목	주요 구성내용
제1장	총 칙	목적, 적용, 경영활동 종사원칙, 감독 및 관리자
제2장	국제해상운송 및 보조업무	국제선박운송업무, 국제선박대리업무, 국제선박관리업무, 무선박국제운송업무
제3장	국제해상운송 및 보조업무 경영활동	국제정기노선연합경영, 국제정기노선운송업무의 신청·노선개설·운임등기, 합병, 금지행위, 외국인경영자의 준수 사항, 국제선박대리·국제선박관리업 경영자의 업무
제4장	외국인경영자 특별규정	외국인경영자의 준수사항, 투자부문, 투자조건 및 업무, 중국내 사무소 설치
제5장	조사 및 처리	조사대상, 조사기관, 조사반 구성, 조사활동, 피조사인의 의무, 피조사인의 이익제기
제6장	법률책임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제7장	부 칙	홍콩·마카오·대만에 관한 사항, 기존 기업의 보증수속 사항, 발효일 및 관련규정의 폐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국제해운조례의 문제점 및 차별관행

국제해운조례의 문제점(미국 FMC 관점)

규제항목	주요 구성내용
허가심사기준 불명확	국제선박운송업 허가시 '중국 해운시장 경쟁상황 및 국제해상운송 업무의 발전가능성'을 고려
NVOCC의 영업 활동규정 미비	NVOCC의 사업면허 부여시에도 영업활동의 범위, 금지활동, 영업 활동의 요건 등에 대한 명문규정 미비
운임등기	외국기업은 운임을 국무원산하 교통부에 등기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등기운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 미비
현지사무소의 경영활동 금지	외국기업은 교통부의 허가를 얻어 중국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사무소의 경영활동은 금지
외국인의 지분제한	외국인의 지분취득을 49%까지만 허용, 외국인이 경영권을 가진 해상운송 및 물류기업 설립은 불가능
외국기업의 화주접근 제한	외국기업은 해운대리점을 통해서만 영업을 하도록 제한하여 화주 접근이 곤란하고 대리점업무를 중국선사 및 중국기업에만 허용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국제해운조례의 문제점 및 차별관행

국적선사에 대한 중국의 차별대우

규제항목	주요 구성내용
연안완적 제한	□ 외국선사는 중국의 피터운송업체만을 통해 연안운송이 가능하며 □ 중국선사에 비해 연안운송비용 과다
보세운송 제한	□ 외국선사에 대해 내륙지역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불허 □ 현지 운송업체를 이용할 경우 내륙운송비 과다
대리점업 불허	□ 외국선사는 중국계 중국 해운대리점만 이용하도록 하여 대리점 수수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반면 중국선사는 대리점업무 허용
영업망 제한	□ 현지법인 설립시 우선 판사처를 설립하고 2~3년 경과후에 현지 법인 설립을 허가하며, 현지법인 설립자본금이 과다
터미널 운영 및 요금차별	□ 중국항만 기항시 외국선사의 터미널 선택권을 배제 □ 연안운송 하역비를 국제운송에 비해 40~50% 할인
통관의 문제점	□ EDI 등 정보망의 미흡하여 화물통관에 장시간 소요 □ Roll-over 화물에 대한 재통관을 의무화하여 통관업무 복잡
선하증권 발행 제한	□ 중국계 해운대리점만이 선하증권을 발행 □ 대리점업무가 허용된 중국선사에게 화물이 집중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국제해운조례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 영향

사업분야	시장진입조건	외국인 투자조건	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해상운송	허가제 유지	합자 및 합작 [허가제, 49%]	<input type="checkbox"/> 경영권 제한 <input type="checkbox"/> 외국선사의 시장진출 제한
국제정기선운송	등록제 전환	합자 및 합작 [허가제, 49%]	<input type="checkbox"/> 경영권 제한 <input type="checkbox"/> 외국선사의 합작참여가 어려우나 중국 선사간 경쟁축진은 긍정적
NVOCC	등록제 전환	합자 및 합작 [허가제, 49%]	<input type="checkbox"/> 경영권 제한 <input type="checkbox"/> 외국선사의 시장진출 제한
국제선박대리점	등록제 전환	합자 및 합작 [허가제, 49%]	<input type="checkbox"/> 외국선사의 시장진출로 마케팅활동 가능 <input type="checkbox"/> 독과점체제 해소는 긍정적
국제선박관리업	등록제 전환	합자 및 합작 [허가제, 49%]	<input type="checkbox"/> 경영권 제한 <input type="checkbox"/> 외국선사의 시장진출 제한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국제해운조례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 영향

사업분야	규제완화 전망	외국인 투자조건	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해상운송	등록제 전환 외국선사 영업허용	투자지분 제한완화 경영권 허용	<input type="checkbox"/> 외국선사 영업허용 <input type="checkbox"/> 해운업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
국제정기선운송	시장진입 자유화	경영권 허용	<input type="checkbox"/> 중국 항만에의 선박기항 지속적 증가 <input type="checkbox"/> 시장경쟁체제 강화로 운임하락
NVOCC	등록제 유지 또는 신고제	투자지분 제한완화 경영권 허용	<input type="checkbox"/> 복합운송업의 참여를 촉진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및 운임경쟁 치열
국제선박대리점	등록제 유지 또는 신고제	투자지분 제한완화 경영권 허용	<input type="checkbox"/> 외국선사에 영업허용 <input type="checkbox"/> 외국선사 진출가속화로 수요증대
국제선박관리업	등록제 유지 또는 신고제	투자지분 제한완화 경영권 허용	<input type="checkbox"/> 외국선사 진출 및 선박투입 증가 <input type="checkbox"/> 선박관리 수요의 지속적 증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적선사 및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국적선사 지원

사업분야	규정 정비 및 환경 변화 전망	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해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의 등록제 전환 □ 외국선사 영업허용 □ 투자지분 제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선사 설립으로 현지화를 추진 □ 합작대리점 설립으로 마케팅능력 강화
국제정기선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의 자유화 □ 외국선사 영업허용 □ 투자지분 제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대리점 진출이 중요 □ 경쟁지엽에 대비하여 마케팅활동 강화
국제선박대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제 유지 또는 신고제로 전환 □ 투자지분 규제완화 □ 배타적 영업권 상실이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대리점 설립 □ 마케팅능력 강화로 수익창출 도모
국제선박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제 유지 또는 신고제로 전환 □ 향후 수요확대 예상 □ 해운업 규제완화로 시장팽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현지화전략을 강력히 추진 □ 선원고용, 선박관리, 선박중개부문에 진출이 유망
무선박운송업 (INV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제 유지 또는 신고제로 전환 □ 내륙운송시장 개방으로 복합운송 발전 □ 내륙개발로 운송수요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진출로 미래시장 선점 추진 □ 내륙운송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개선이 기대되므로 복합운송능력 강화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적선사 및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정부차원

구분	내용	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항로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개방, 선박투입 규제 □ 제3국선사 진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간 합의에 따라 규제(행정적 규제사항) □ 미국과 EU가 개방을 요구하므로 개방이 불가피 □ 향후 2~3년내에 규제완화가 예상 □ 중국 국제해운조례는 이미 등록제로 완화
국적선사의 중국시장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원적, 내륙운송 □ 현지법인 설립 □ 해운대리점업무, 선하증권 발행 □ 터미널 선택, 항만요율 적용 □ 통관절차, EMI업무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만의 문제인가, 해운문제인가, 규정정비로 해결가능인가를 검토하여 대응방안 결정 □ 해운농재이고 한국만의 문제라면 한중외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 외국도 포함되는 문제는 미국, EU와 공조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